

#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530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. . .  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  
(교육복지과)

## 1. 개정이유

-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 과제의 이행사항으로 입시·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에서 여러 개의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관련 조문 삭제(조례 제3조의3)
  - 단위시설의 기준 중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는 관련 조문 삭제
- 나. 입시·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의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(조례 제3조의4)
  -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과제 이행사항으로 입시·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은 여러 개의 교습과정 운영 시 가장 큰 면적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시설기준 완화

## 3. 개정안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불임

나. 신·구대비표: 불임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2. 8. 10.(수) ~ 2022. 8. 30.(화) (20일간, 의견없음)
- 2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규제심사: 원안가결

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2호 중 “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.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. 다만,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.”를 “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.8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3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입시·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 한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3(단위시설의 기준)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열람실 :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.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. 다만,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3조의3(단위시설의 기준)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의4(교습과정별 시설기준)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3조의4(교습과정별 시설기준) ①----- ----- ----- <u>다만, 입시·검정 및 보습분야에서 한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 계 법 령

## ▣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제8조(시설기준)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▣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
제3조의3(단위시설의 기준)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의실 :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(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) 이하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.
2. 열람실 :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.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. 다만,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.
3. ~ 6. (생략)

제3조의4(교습과정별 시설기준)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.

② ~ ④ (생략)

### [별표 1] 학원의 시설규모 (제3조의4제1항 관련)

종류	분야	계열	교습과정	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	
				자치구 지역	군 지역
학교교과 교습학원	입시·검정 및 보습	보통교과	입시종합	230㎡이상	130㎡이상
			기숙학원	별표3과 같음	
			보습(논술 포함)	60㎡이상	60㎡이상
			검정고시	130㎡이상	100㎡이상
		진학지도	진학상담·지도	60㎡이상	60㎡이상
(이하생략)					